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4. 선고 2015고단2330 판결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2330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25. $^{[1]}$ 2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대화를 계속

하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대화 내용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5. 1. 2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phi, 12M)$ 에게 "섹스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 25.경 피해자 $D(\phi, 12M)$ 에게 "섹스하자, 가슴과 음부사진을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 각 성폭력 피해자 속기록(E, D)
-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협박하여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4. 2. 5. 이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

미주

[1] 1) 공소사실에는 "2014.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2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